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제정 2008. 07. 15.

개정 2023. 02. 06.

개정 2024. 02. 05.

개정 2025. 05.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럭비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4조(사업)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3. 2. 6>

제2조(적용범위) 협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국내 대회에 적용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주최 측의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2. 6>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적용할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2. 6>

1. '주최'라 함은 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단체를 말한다.
2. '주관'이라 함은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후원'이라 함은 대회에 필요한 재정, 시설, 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도 럭비협회'(이하 '시도협회')라 함은 협회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단체를 말한다.
5. '전국대회'라 함은 대한체육회 및 협회가 승인한 전국규모의 대회를 말한다.
6. '지역대회'라 함은 전국대회를 제외한 각 시·도 협회 소속 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7. '인정대회'라 함은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나 협회 대회위원회에서 행정상 사유로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8. '신규대회'라 함은 신설하는 대회를 말한다.
9. '기존대회'라 함은 연간 사업계획을 통해 1회 이상 개최된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4. 2. 5>

제4조(대회의 주최 및 주관) ① 전국대회는 정관 제4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서 주최하며, 개최지역 시도협회에 대회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역대회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시도협회가 주최 및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제2장 대회 유치 및 승인

제5조(대회유치 신청) ① 대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 및 시도협회는 대회 유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 유치신청서 제출 시기는 제6조제1항을 따른다.
② 대회 유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회 개최 및 유치 목적
2. 참가대상, 대회기간, 장소, 개최기관(주최, 주관, 후원) 등
3. 개최지 해당 지자체 유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4. 대회 운영 계획서(조직위 편성, 시설, 안전, 홍보, 예산편성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 2. 6>

제6조(대회신청 기한) ① 신규대회의 경우, 대회 개최 전년도 9월까지, 기존대회의 경우는 대회 개최 전년도 10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회의 경우는 대회 개최 전년도 12월까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 수시로 유치신청을 받는다.
<개정 2023. 2. 6, 2024. 2. 5>

제7조(개최지 결정) ① 기존대회의 유치를 신청한 경우, 대회위원회에서 대회유치신청내용을 심의한 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신규 대회의 유치를 신청한 경우,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한 후, 대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필요시 대회위원회는 유치를 신청한 지역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할 수 있다.
④ 대회유치 신청을 한 기관(단체)이 없거나 대회유치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대회위원회는 대회의 성격, 참가팀의 여건, 경기장 환경,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회 개최지를 선정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⑤ 개최지 결정 후 대회를 취소하거나 대회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대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3년간 대회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 2. 6>

제8조(대회 취소 및 계획 변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 대회를 취소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회준비가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를 취소해야 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대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유치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3. 2. 6>

제9조(대회유치 지원금) <삭제 2025. 5. 23.>

제3장 대회 운영

제10조(대회운영 절차) 대회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6>

1. 개최지 결정 : 전년도 12월 한
2. 대회 운영계획 수립 및 하달 : 대회 개최 2개월 전
3. 대회 참가 신청 : 대회 개최 4주 전
4. 대표자 회의 및 대진 추첨 : 대회 개최 2주 전
5. 경기장 준비 및 점검 : 대회 1일 전
6. 대회 결과 종합 및 보고 : 대회 종료 후 2주 이내

제11조(대회 구분) 대회는 참가대상에 따라 남·여 팀을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종별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2. 6, 2024. 2. 5>

- | | |
|------------|------------|
| 1. 15세 이하부 | 2. 18세 이하부 |
| 3. 대학부 | 4. 일반부 |
| 5. 대학일반부 | 6. 동호인부 |

제12조(대회 방식) 대회의 방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택한다. <개정 2023. 2. 6>

1. 토너먼트
2. 리그
3. 리그 및 토너먼트 혼합

제13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대회 조직위원회는 협회와 주관단체가 협의하여 지휘부, 경기부, 심판부, 지원부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휘부는 협회와 주관단체를 대표하는 인원으로 편성하며, 대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③ 경기부는 협회의 대회위원회 위원과 주관단체에서 선정한 인원 등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추가로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

1. 경기운영 총괄
2. 대회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및 운영
3. 대회규정, 경기규칙 검토
4. 대표자 회의 준비 및 주관
5. 경기장 및 경기시설 준비
6. 팀, 선수 신분 확인
7. 경기진행 및 경기장 질서 유지
8. 경기전 국민의례 및 시상식 진행
9. 경기 기록유지 및 분석, 결과 유지
10. 경기보조요원, 의료지원인원 확보 및 통제
11. 기타 경기 및 행사 진행에 관련된 사항

④ 심판부는 협회의 심판위원회 위원과 상임심판, 일반심판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추가로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

1. 심판배정 및 통제
2. 심판관련 시설, 장비, 물자 준비
3. 팀 및 선수 출전 확인
4. 심판결과 분석 및 결과 유지
5. 심판판정 이의신청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⑤ 지원부는 협회 및 주관단체 인원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추가로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

1. 전반적인 대회 계획 수립 및 지원
2. 조직위 인원 편성 및 지원
3. 숙박 및 식사, 주차 지원
4. 안전 및 방역계획 수립 및 지원
5. 방송 및 대회 홍보
6. 예산 집행 및 결산
7. 기타 대회 지원관련 부여된 임무수행

⑥ 대회조직위원회에 편성된 인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가용예산 범위내 여비를 지급[별표 1]할 수 있으며, 경기운영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별표3]

<신설 2023. 2. 6, 개정 2024. 2. 5>

제14조(경기진행 및 의료지원요원) ① 주관단체 요청시, 경기부는 대회위원회, 심판부는 심판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주관단체에서 부담한다.

② 경기 보조요원과 의료지원 요원은 주관단체에서 경기부와 협조하여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제15조(질서대책위원회 운영) ①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5조 제7항에 따라 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를 위해 질서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대회장, 위원은 경기부원과 심판부원 등으로 구성하며,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신설 2023. 2. 6>

제16조(퇴장자처리) 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5조 제7항에 따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대회 기간 동안 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은 지휘부, 경기부, 심판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휘부 중 회장이 지명한다.

② <삭제 2024.2.5.>

③ 퇴장선수에 대한 심의절차와 벌칙기준은 아래 각 호에 따르며, 사안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퇴장 명령 3경기 출전정지
2.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퇴장 명령 2경기 출전정지
3. 이외 경고 누적 퇴장을 포함하여 경기규칙 위반이나 파울플레이에 의한 퇴장 명령 1경기 출전정지

(단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 선수는 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에서 퇴장자 처리기준보다 1단계 하향하여 경감조치 할수 있으며, 1경기 출전정지 후 경감조치를 받으면 엄중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4. 당해년 동일선수가 동일한 사유로 퇴장 재발생 시 상정기준의 2배 이내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5. 해당선수와 지도자는 퇴장선수처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6. 퇴장선수 처리 심의결과는 심의 후 결과를 당사자 및 해당팀에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7.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 및 해당팀은 서면으로 24시간 이내 혹은 해당팀 다음 경기 3시간 전 중 빠른 시간까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항소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징계의 경감은 최초 징계에서 최대 1경기로 한정한다.
8. 퇴장선수에 대해 협회가 정한 특별교육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퇴장선수에 대한 출전정지의 효력 범위는 국내대회로 한정하며 대한체육회, 협회 주최·주관대회로 한다. 종합대회 평가전 및 시도럭비협회 주최 대회는 출전정지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4. 2. 5>
- ⑤ 출전정지는 진학 등으로 인한 소속팀 변경 및 당해연도 대회가 종료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은 계속된다. <신설 2023. 2. 6, 개정 2024. 2. 5>
- ⑥ 주심은 플레이잉 인클로저(Playing enclosure는 경기구역과 경기운영구역을 포함한다)내 인원에게 퇴장이나 교체를 명령할 수 있고, 예비심(벤치관리자)은 테크니컬 에어리어 내 인원의 퇴장이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5>
- ⑦ 지도자가 퇴장 명령을 받았을 경우 경기장(관중석 포함) 밖으로 완전히 떠나야 하며, 그 이후 팀에 대한 지도(유, 무선 포함)를 할 수 없다. 퇴장 명령을 받은 지도자는 해당 경기와 다음 1경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대회 참가 제한 조치는 질서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필요 시 스포츠평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신설 2024. 2. 5>

제17조(경기장) ① 경기장은 국제럭비위원회 경기규칙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 천연 잔디 경기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관단체는 경기장 및 연습장을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 ③ 경기장은 경기 개시일 7일 전부터 대회 개최와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제18조(경기시간) 종별 경기시간은 다음의 기준으로 대회요강 및 규정에서 정하며, 필요시 일출·몰, 날씨, 경기장 상태, 참가팀 여건, 경기진행,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경기부에서 대회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① 15인제
1. 18세 이하 부 : 전·후반 각 30분, 중간휴식 15분 이내
 2. 대학부 : 전·후반 30분 ~ 40분, 중간휴식 15분 이내
 3. 대학일반부, 일반부 : 전·후반 각 40분 이내, 중간휴식 15분 이내
 4. 동호인부 : 전·후반 25분 ~ 35분, 중간휴식 15분 이내
- ② 12인제(15세 이하 부) : 전·후반 각 20분 이내, 중간휴식 15분 이내
- ③ 7인제 : 전·후반 7분, 중간휴식 2분 이내
- ④ 터치럭비 및 태그럭비: 대회 여건 고려 <개정 2023. 2. 6, 2024. 2. 5>

제19조(경기장 부대시설) 주관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기장 부대시설이 사전에 구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경기 중 팀 지도자와 대기 선수들이 앉을 수 있도록 팀별 벤치를 설치해야 한다.
- ② 경기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경기진행실, 의료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TMO, 심판대기실에 의자와 무전기 충전용 전원을 구비해야한다.
- ④ 경기장 전체가 잘 보이는 곳에 대회본부석, 방송실을 설치해야 한다.
- ⑤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방송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⑥ 2개 회선 이상의 유선인터넷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23. 2. 6>
- ⑦ 주관단체는 협회 및 주최단체가 설정한 대회 마케팅과 브랜딩 정책에 따라야 하며 광고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 의무를 갖는다. 주관단체 후원사 및 경기장 내 현수막 추가 설치는 협회 및 주최단체와 사전 협의한다. <신설 2024. 2. 5>

제20조(시설 점검) 주관단체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경기부와 협조하여 사전에 경기장 및 기타 시설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대회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제21조(예산 집행 및 결과 보고) ① 주관단체는 유치지원금, 기금 등 관련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주관단체에서 수립한 사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단체는 협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예산 사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단체는 예산사용계획에 의해 예산을 집행한 후 정산을 실시하며, 대회 종료 후 1개월 예산집행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6>

제22조(숙박시설) ① 주관단체는 지휘부, 경기부, 심판부, 지원부 등 대회 관계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회 관계자와 참가팀이 동일한 숙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회 관계자 숙소를 별도로 지정한다. <신설 2023. 2. 6>

제23조(안전대책) ① 선수단 및 심판은 응원단 및 관중과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고, 대회 본부석은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되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② 부상자 치료를 위해 해당 지역 병원을 사전에 협조하고, 구급차는 경기장 근처, 경기장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배치한다.
③ 의료지원요원은 경기장내 지정된 곳에서 대기하고, 들것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④ 감염병에 대비하여 경기장 방역대책을 구비한다. <신설 2023. 2. 6>

제24조(상업적 권리) ① 협회는 방송중계권, 광고 판매, 후원사 선정, 입장료 징수

등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 및 후원 기관(단체)은 상업적 권리문제에 대해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상업적 권리 조정 등의 문제 발생시 협회가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3. 2. 6>

제25조(보험가입) 주관단체는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제26조(대회 사용구) ① 대회 사용구는 협회의 승인을 받은 공인구를 사용한다.

② 협회 공인구는 공인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3. 2. 6>

제27조(대회 홍보) 주최 및 주관단체는 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회 운영계획에 홍보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제28조(대회 결과보고) 주관단체는 대회 종료 후 2주 이내 대회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6>

부 칙 (2023.2.6.)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5.23.)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회 유치 신청서

대 회 명				
대회기간				
참가대상				
대회장소	시 도 명			
	경 기 장 명	(규격 : M × M)		
	경기장 주소			
	관 랑 석 수	명	주차대수	대
대회 개최 및 유치목적				
주최단체				
주관단체				
후원기관(단체)				
대회유치지원금				
유치신청 기관(단체)	기 관 명		담당부서	
	대표자명		연 락 처	
	주 소			
주관단체	단체명		대표자명	
	담당자		연 락 처	

상기와 같이 럭비대회를 유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유치 신청기관 :

(직인)

(사) 대한럭비협회 귀중

<별지 제2호서식>

대회 유치 동의서

○○ 럭비협회는 대한럭비협회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제00회 전국 ◇◇ 럭비 선수권 대회 유치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아 래 -

1. 대 회 명 : (예시) 제00회 전국 ◇◇ 럭비 선수권 대회
2. 대회장소 : (예시) ○○시 ◇◇운동장
3. 대회기간 : (예시) 202◇년 0월 0일 ~ 0월 0일
4. 유치기관 : (예시) ○○도 ◇◇시

202 년 월 일

유치신청 ○○시(도) (직인)

<별지 제3호서식>

대회 운영 계획서

1. 대회명 :
2. 대회목적 :
3. 대회기간 :
4. 대회장소 :
5. 참가팀
 - 1) 참가 대상 :
 - 2) 참가 예상팀 수 :
 - 3) 참가 예상인원 :
6. 대회방식 : 예) 토너먼트, 리그, 리그&토너먼트
7. 개최기관
 - 1) 주최 :
 - 2) 주관 :
 - 3) 후원 :
8. 대회조직위 편성 및 임무

구 분		임 무	인 원
지휘부	대회장		
	부대회장		
경기부			
심판부			
지원부			
질서대책위원회			
퇴장선수처리심의위원회			

9. 시설 사용 계획

1) 구장 운영 계획

구 분	구장명	주 소	잔디관리상태		좌석수	조명유무
			천연잔디 여부	상/중/하		
경기장						
연습구장 1						
연습구장 2						

2) 부대시설 운영(준비) 계획

- 팀 벤치
- 경기진행실
- 의료대기실
- TMO
- 심판대기실
- 대회본부석
- 방송실
- 인터넷 시설
- 화장실
- 관중석
- 점수판 및 타임보드
- 기타 편의시설 등

3) 숙박시설 운영 계획

- 대회운영본부 숙소 배정
- 심판 숙소 배정
- 팀 숙소

4) 주차계획

10. 안전 대책

1) 의료지원 계획 :

- 의료인력 및 구급차 배치, 지정병원 선정
- 기타 의료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계획

2) 폭서기/폭한기 대책

3) 일반 안전 대책

4) 경기장 안전(위험) 시설 점검 대책

5) 안전인력 운영 계획

11. 홍보 계획

1) 현수막 게첩

2) 언론홍보

3) 중계방송

4) 기타

12. 예산편성(안)

구 분		대 회 명:
목	세 목	
총계		
운영비	소계	
	일반수용비	◦ 운영수당 000,000원x0일x0명= 00,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 주최자책임배상보험 0,000,000
	임차료	◦ 임차비용(책상,의자,음향시설 등) 0,000,000
업무 추진비	소계	
	사업 추진비	◦ 회의비 0,000,000
여비	소계	
	국내여비	◦ 숙박비 00,000원x00실x0일= 00,000,000

13. 대회 규정 (*세부 규정 필요)

※ 붙임

1. 경기장 배치도면(기록실 위치“※” 표시)

시도협회 담당	구 분 시도력비협회	성 명	전화(사무실)	핸드폰	기록실 위치에“※”표시 (※ 표시 불 가능시 서술설명)

2. 주경기장 내·외부 사진

경기장 내부전경
경기장 외부전경

3. 연습경기장 내·외부 사진(2면 이상)

연습구장 내부전경
연습구장 외부전경

[별표 1] <개정 2024.02.05.>

국내대회 여비 지급표

여비 구분	체 재 비			비고
	일비	숙박비	식비	
대회운영인력 (경기부, 심판부 등)	25,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지역 70,000)	25,000	

* 일비란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택시요금 등 근거리교통비, 주차료,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별표 2] <개정 2025. 5. 23.>

대회운영 관련 수당 지급표

■ 대회운영 관련 수당 지급기준

- 상임심판의 경우는 심판일수 10일/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가능

구분		경기 수당(원)	비고
15인제	주 심	100,000	1경기 지급비용 (단, 경기수당최고금액은 15만원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경기수당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는 5만원을 지급한다)
	선 심	50,000	
	예비심	30,000	
	비디오레프리	30,000	
	심판평가관	50,000	
7인제	주심/선심/예비심 비디오레프리/ 심판평가관	4시간 미만 50,000 4시간 이상 100,000	1일 지급비용
15인제 /7인제	지휘부, 심판부장	100,000	1일 지급비용
	경기력평가관	100,000	

[별표 3] <개정 2025. 5. 23.>

수당 지급 기준표

■ 대회운영 관련 수당 지급기준

- 상임심판의 경우는 심판일수 10일/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가능

구분		수당(원)	비고
매치데이 닥터		300,000	- 국제대회 - Lv2 ICIR 이상
안전관리자		300,000	- 국제대회
통역요원		120,000	- 국제대회
경기부, 지원부		100,000	- 부장, 부원 수당 동일
메디컬 매니저 · 트레이너		100,000	
운영요원		80,000	
장내 아나운서	4시간 이하 (15인제, KRU 주최 행사 등)	200,000	- 경기 1시간 전 소집 - 영어 가능자
	4시간 이상 (7인제, AR 주최 행사 등)	300,000	